



화정교육통신

전북 전주시 덕진구 세병로 55
<http://전주화정초등학교.kr>
 (교무실 270-8403, 행정실 270-8474)

함께 배우고
 서로 나누며
 더불어 성장하는
 화정 교육

코로나19 등교중지 지침 변경 안내

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?

코로나19 감염병 4차 대유행이 이어지면서 연일 1,500명~2,000명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. 학교는 코로나19 감염예방 및 발생을 대비하여 학생 교육 및 교직원 연수를 실시하는 등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. 개정된 코로나19 감염예방관리 지침 변경으로 등교중지 지침이 일부 변경되어 안내 드리니 참고하시어 안전한 학교가 유지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.

☑ 등교중지 일부 지침 변경 내용

대상	등교중지 기간	출결 증빙자료
확진 받은 학생	보건당국의 입원치료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	• 입원치료통지서
격리 통지받은 학생	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	• 격리통지서
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이 격리 통지 받은 학생*	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	• 동거인의 격리통지서
	- 다만, 등교를 원하는 학생이 있는 경우, 1) 매 등교 희망일로부터 2일 이내* 학생의 진단검사(PCR검사) 결과가 음성인 경우나 2) 격리통지를 받은 '즉시' 자가격리된 동거인과 접촉 없이 별도 시설에서 격리하는 경우 등교 허용 가능 *매 등교 희망일로부터 2일 이내 기준은 날짜 기준이며, 문자 통지 사본 등을 제출 (예1) 토요일에 음성 결과를 통지받은 경우: 월요일에는 등교가 가능하나, 화요일에도 등교를 희망할 시에는 일요일 이후에 통지받은 음성결과를 제출해야 함 (예2) 화요일에 음성 결과를 통지받은 경우: 수요일과 목요일에는 등교가 가능하나, 금요일에도 등교를 희망할 시에는 수요일 이후에 통지받은 음성결과를 제출해야 함	
본인 또는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이 진단검사를 실시한 경우	진단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	•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의 검사실시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(예: 문자 통지 사본 등)
코로나19 의심증상 학생 (임상증상 발현 학생)	증상 발현 시부터 증상 소멸(호전) 시까지	[코로나19 검사 결과 '음성'인 경우] • 검사 결과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(예: 선별진료소 진료확인서, 문자 통지 사본등)
	<유의사항> ※ 코로나19 의심증상 학생은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진료 및 검사를 받는 것이 원칙이나, 부득이 미실시한 경우 선별진료소 방문 또는 진료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와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와 학부모의견서(학교 홈페이지-공지사항 탑재) 제출하여 출석인정결석 처리가능 - 등교를 원하는 학생이 있는 경우 2가지 서류 동시 제출 및 확인 후 허용 가능 1) 선별진료소의 검사(진료,방문)결과 2) 증상에 대한 의사소견(진단)을 확인 후 등교(출근) 허용 가능-코로나19 바이러스와의 연관성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도 됨	

2021년 8월 31일

전주화정초등학교장 장미옥